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부표 2-2> 참조)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 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함)			

- ※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수술급여금"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부표2-2

1~5종 수술분류표



별첨2 [표 24] 참조

(간편)[기본]신수술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

제2-1조의3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1조의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2-1조의5 "통원"의 정의와 장소

제2-1조의6 보장계약 등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의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

제2-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2] 수술보장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

[부표2-3] 신수술 분류표

(간편)[기본]신수술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간편)" 부분이 없습니다.
- 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부분이 "(무배당)"으로 변경됩니다.
- ※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 이 특약은 제2-1조의6(보장계약 등의 정의)에서 정한 총2개의 보장계약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 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2-8조의2["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2-1조의2 개별 용어의 정의

제1-2조(용어의 정의) 외에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별첨 1> 참조)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하며,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제외합니다.
- 2. 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 : <부표2-2> "수술보장대상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3.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4.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 5. 수술코드 : <부표2-3> "신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말합니다.

제2-1조의3 "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신수술 분류표"(<부표2-3> 참조)에서 정한 "수술코드"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코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하고,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KDRG)"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된 "ADRG(Adjacent DRG)" 중 회사가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

환자의 주진단명 및 기타진단명, 수술처치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 특약의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분류체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관리하는 KDRG 버전 4.5(2023.1.1 시행)의 ADRG분류체계를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ADRG(Adjacent DRG)

환자의 주진단 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 MDC)와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과계 그룹"과 "내과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시술명, 진단명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코드에서 향후 "KDRG"의 개정으로 동일한 수술에 대해 수술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이 특약 체결 시점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따 릅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 시점 이후 "ADRG"가 신규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신수술 분류표"(<부표2-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수술코드를 결정합니다.

제3항 설명

- · 특약 체결 시점에 간이식에 해당하는 수술코드는 A010(KDRG 버전 4.5)이였으나, 피보험자가 간이식 수술을 받은 시점의 수술코드가 A080(예시. KDRG 버전 5.0)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회사는 A010(KDRG 버전 4.5)에 해당하는 급여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술받은 시점의 "주진단 범주(MDC)와 시술명"을 이 특약 체결 시점의 "KDRG"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 시점에서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수술이 향후 비급여항목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제2-1조의4 "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제2-1조의5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1조의6 보장계약 등의 정의

이 특약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장종류에 따라 "입원 (당일입원 제외) 급여수술 보장계약",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 보장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자는 각 보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하며, 각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각 보장계약을 합하여 "특약"이라 합니다)

- 1. 입원(당일입원 제외) 급여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당일입원 제외) 급여 수술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2.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 수술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 각 보장계약별 보장내용, 유지, 감액 등이 다르므로 각 조항을 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각 보장계약에 해당하는 보험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입원(당일입원 제외) 급여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입원하여 "급여수술"」을 받았을 때 : 입원(당일입원 제외) 급여수술급여금 (입원 1회당 1회에 한함)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보장대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당일입원 포함, 1일 1회에 한함)하 여 "급여수술"」을 받았을 때 :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급여금 (통원(당일입원 포함) 1회당 1회에 한하며, 수술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함)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편심사형"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급여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1회의 입원 또는 1회의 통원 중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퇴원일 또는 통원일을 기준으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나의 수술코드에 한하여 급여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4항 설명

ADRG는 1회의 입원 또는 제1회의 통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더라도 KDRG에서 정한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치료적 자궁소파술(N141)'과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 자궁절제술(악성종양 제외)(N021)'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외과적 우선순위에 따라 생성되는 ADRG는 '복강경을 이용한 주요자궁절 제술(악성종양 제외)(N021)'입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하거나 동일한 의료기관에 퇴원 후 다른

- 일자에 재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제2-2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도 피보험자가 계속입원 중에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피보험자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에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입원(당일입원제외) 급여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약에서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①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피보험자가 유방재 건술(수술코드상 J051 또는 J052, 이하 동일)과 유방절제술(수술코드 상 J061 또는 J062를 말하며, J063은 제외, 이하 동일)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유방재건술이 아니라 유방절제술에 해당하는 수술코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급여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 보장계약의 경우, 그 수술 코드(유방절제술)로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급여금을 지급받은 보장횟수가 연간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해당 보장계약의 급여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항 설명

피보험자가 입원을 하고 유방재건술(J051)과 유방절제술(J061)을 동시에 받은 후 퇴원할 경우 생성되는 'ADRG'는 유방재건술(J051)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유방재건술(J051)에 해당되는 수술급여금이 아니라 유방절제술(J061)에 해당하는 수술급여금을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하였으나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통해 주진단범주(MDC)와 의료행위 등으로 이 보장에서 정한 수술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제2-1조의3("급여수술"의 정의와 장소) 1항에서 정한 "급여수술"에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다음 제9항은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 보장계약에 한합니다.]

⑨ 통원(당일입원 포함) 급여수술급여금은 "수술코드당 연간 3회"를 지급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

제2-5조 사고증명서

- ① 제1-5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 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 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EDI) 필수기입),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 등),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포함),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 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